

문화콘텐츠 사업협력 연장 업무협약서

(재)서울디자인재단 | (재)중구문화재단

(재)서울디자인재단과 (재)중구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디자인 문화 확산을 위한 연속성 있는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다음과 같이 연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연장 업무협약서는 (재)서울디자인재단과 (재)중구문화재단 간의 연속성 있는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'(재)서울디자인재단과 (재)중구문화재단 간의 문화콘텐츠 사업협력 업무협약서(이하 사업협력 업무협약서)' 연장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근거)

본 연장 업무협약서는 2015년 6월 3일 양 기관이 상호 협의 하에 체결한 '사업협력 업무협약서'의 '제 4조(협약기간) - 이 협약서는 상호 체결 후 2년까지 유효하며, 그 이후에는 상호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.'를 근거로 한다.

제3조(내용)

본 연장 업무협약서는 2015년 6월 3일 (재)서울디자인재단과 (재)중구문화재단이 체결한 '사업협력 업무협약서'의 내용을 유지한다.

제4조(기간 및 효력)

본 연장 업무협약서는 서명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, 그 이후는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.

제5조(협약내용의 변경)

본 연장 업무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보관)

본 연장 업무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협약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.

2017. 6. 29.



서울디자인재단

(재)서울디자인재단

대표이사 이근 (인)



CAC

충무아트센터
CHUNGMU ARTS CENTER

(재)충구문화재단

사장 김승업 (인)